

5월3주차 전체위원회 심의의결서

| 연번 | 접수번호 | 건축구분 | 심의구분 | 대지위치 | 대지면적 | 건축면적 | 연면적 | 건폐율 | 용적율 | 주용도 | 층수 | 용도지역 | 일시 | 심의결과 | 의결내용 |
|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-|---|
| 1 | 2020650000P001406 | 신축 | 재심의 |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3059 | 163 | 80.12 | 157 | 49.1534 | 96.31 | 제1종근린생활시설 | 2/ | 자연녹지지역 | 20.05.21 | 원안동의 |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, 건축허가(신고)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(신고)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. |
| 2 | 2020650000P001403 | 신축 | 재심의 |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호동 1477 | 7,957 | 1,555.56 | 1,555.56 | 19.5496 | 19.54 | 운동시설 | 1/ | 자연녹지지역 | 20.05.21 | 재심의 | 이전 심의 조건 사항 이행 바랍니다. |
| 3 | 2020650000P001274 | 신축 | 신규 |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3904 | 428 | 85.37 | 79.97 | 19.9463 | 18.6846 | 단독주택 | 1/ | 보전관리지역 | 20.05.21 | 재심의 | 다락층은 지양하고 건축물 최고 높이는 5M 미만으로 계획 바랍니다. 주변 자연경관을 고려하여 오름과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재계획 바랍니다. 외부 재료는 자연재 마감 계획 바랍니다. |
| 4 | 2020650000P001317 | 신축 | 신규 |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2354 | 354 | 45.24 | 45.24 | 12.77 | 12.77 | 관광휴게시설 | 1/ | 계획관리지역 | 20.05.21 | 부결 | 건축행위 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자연지형 보존의 필요성이 있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.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는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 35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규정 제4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의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|